

# 社団法人 韓國酪農肥育協會定款

會員과의 紐帶를 더욱 公公히하고 協會의 參與를 돕기위해 이달호에 협회 기본법이라고 할수 있는 定款을 게재하여 會員 自身の 協會에 積極的인 參與와 結束으로 協會가 本然의 任務를 爲해 無限히 發展할수 있도록 바라는 바이다.

## 定 款

###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의 名稱은 社團法人 韓國酪農肥育協會라 한다.

第2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한 地域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3條(目的) 本會는 酪農 및 肥育牛產業의 劃期的 發展과 會員의 親睦 및 共同利益과 權益을 圖謀하며 牧畜業의 所得增大와 輸出入 代替產業으로서의 基盤을 自主的으로 造成하여 牧畜業의 健全한 發展을 成就, 國民 經濟의 向上과 國家의 畜産振興施策에 積極 寄与함 을 目的으로 한다.

### 第2章 事 業

第4條(事業) 本會는 다음 事業을 遂行하므로서 前條의 本會目的을 達成코저 한다.

1. 牧畜業의 經營 및 技術等的 啓蒙, 調查 指導普及宣傳 및 資料刊行物과 會誌의 發刊事業
2. 肉質과 乳質改善事業
3. 草地改良 造成等 國土利用度 向上事業
4. 肉價와 乳價安定 및 牧畜用飼料 安定化를 위한 事業
5. 種畜 및 家畜精液, 飼料, 牧草種子, 機資材 輸出入 斡旋事業
6. 牧畜用飼料 및 機資材의 共同購買 斡旋 事業
7. 畜産物의 共同販賣와 輸出入 斡旋事業
8. 施設 및 運營資金의 斡旋事業
9. 國際機構와의 交流 및 相互協助

10. 會員 相互間의 意思調整 親睦 福利增進 事業

11. 牧畜農家의 海外旅行 推薦事業

12. 其他 本會目的 達成에 必要한 一切의 附帶 事業

### 第3章 會 員

第5條(資格 및 加入節次) 本會의 會員은 酪農 또는 肥育農家로서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所定의 入會手續을 畢한 者로서 理事會의 承認을 받은 者로 한다.

第6條(會員의 義務) 本會의 會員은 本會 定款의 모든 條項에 規制된 事項과 理事會와 總會에서 決議된 諸般事項을 遵守할 義務를 갖는다.

第7條(會員의 權利) 本會의 會員은 任員의 選舉權 被選舉權을 갖는다.

第8條(入會金, 會費) 本會의 入會金 및 會費는 定額制로 하며 그 金額은 總會에서 定한다.

第9條(褒賞) 協會에 功獻한 業務가 顯著한 會員 또는 個人에 對하여 褒賞할 수 있다.

第10條(制裁 및 除名)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경우에 理事會의 決議로서 制裁 또는 除名할 수 있다.

1. 會費의 未納會員
2. 本會에 對한 不正行爲會員
3. 本會의 名譽를 毀損시킨 會員
4. 本會 事業을 妨害하거나 損害를 끼친 會員
5. 其他 會員業務를 履行치 않은 會員

第11條(脫退) ① 會員은 다음 各号의 事由로 本會를 脫退하는 것으로 한다.

1. 會員資格의 喪失
2. 解散, 破産, 禁治産 및 除名
3. 脫退 申請書의 提出
- ②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依한 脫退 申請書는 當該 地域別 支會長에게 提出한다.

第12條(納入金의 不返還) 會員이 納入한 入會金 會費 其他 納入金은 第11條의 規定에 依하여 除名 또는 脫退할 때에 이를 返還하지 않는다.

#### 第4章 任員 및 職員

第13條(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名
2. 副 會 長 2名以內
3. 理 事 30名以內(會長, 副會長包含)
4. 常勤理事 1名
5. 監 事 2名

第14條(任員의 選任) 理事 監事는 會員中에서 總會에서 選任하고 會長, 副會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하되 常勤理事는 會員外에서 會長이 提請하여 總會에서 選任한다.

第15條(任員의 職務)

-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統理한다.
-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理事會 決議에 따라 미리 定한 順位에 依하여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③. 常勤理事는 會長 및 副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의 命에 따라 日常事務를 處理 管掌한다.
- ④. 監事는 本會의 財産과 業務執行狀況을 監査하고 그 結果를 總會와 理事會에 報告한다.
- ⑤.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 運營하며 會務를 執行한다.

第16條(任職員의 報酬) ① 常勤理事 및 職員의 給與 規程은 理事會에서 制定한다.

- ② 常勤理事 以外的 任員과 顧問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第17條(任員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는 2年으로 한다.

- ② 補闕選任된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하고 任期滿了時에는 後任任員이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遂行한다.

로 하고 任期滿了時에는 後任任員이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遂行한다.

第18條(任員報告) 前第17條에 따라 任員의 改選, 補選으로 任員이 變更되었을 때에는 이를 主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9條(顧問) 本會運營上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顧問을 둘 수 있다.

第20條(任員의 解任) 本會의 任員은 다음의 경우 總會의 議決에 따라 解任할 수 있다.

1. 本會의 名譽를 毀損하였을 때
2. 本會에 對하여 不正行爲가 있을 때

第21條(職員의 任免) 本會職員은 會長이 任免하고 理事會에 이를 報告한다.

#### 第5章 會 議

第22條(會議) 本會에 總會와 理事會를 둔다.

第23條(總會)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會議의 議長이 된다.

- ② 定期總會는 每年 1月中에 이를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決議 또는 代議員 3分の1 以上の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24條(總會의 構成) ① 總會는 地域別支會 會員總會에서 選任되는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 ② 地域別支會의 代議員은 當該支會의 會長이 된다.
- ③ 代議員은 100名 以內로하고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25條(總會 召集方法) 總會는 開會 10日前에 會長이 會議目的 事項 및 議決事項을 通知하여 이를 召集한다.

第26條(總會 議決事項)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定款의 制定 및 變更
2. 任員의 選任 및 解任
3. 收支豫算書, 決算書 및 事業計劃書
4. 基本財産의 造成 및 處分
5. 入會金 및 會費의 賦課 및 徵收方法
6. 解散 및 이에 따르는 財産處分
7. 其他 理事會가 附議한 重要事項 및 定款이 定한 事項

第27條(總會 議決定足數) 總會는 代議員 過半數以

상의出席으로成立되며出席會員數의過半數贊同으로附議案件을議決하되可否同數일 때에는議長이 이를定한다.

다만,定款의變更 및解散決議는代議員 3分の2以上出席과出席會員 3分の2以上の決議가 있어야 한다.

第28條(代理權行使)總會에서代理人으로議決權을行使하고자 하는 때에는本會會長이 미리發給한委任狀을總會開會前에總會에提出하여代理人으로서代理權을認証받아야 한다. 다만, 1人1票의代理權行事を 할 수 있다.

第29條(總會會議錄)總會案件의討議經過와結果를要約하여議事錄을作成하고議長이指名한 2人以上の出席會員의署名을 받아議事錄의內容을確認케 하고 이를 다음總會에報告해야 한다.

## 第6章 理事會

第30條(理事會構成)理事會는會長,副會長 및理事로서構成하고監事는理事會에서意見を陳述할 수 있다.

第31條(理事會召集)理事會는會長이必要하다고認定할 때 또는 3分の1以上理事의要請이 있을 때에會長이召集하고 그議長이 된다.

第32條(理事會의議決定足數)理事會는在籍理事數의過半數出席으로서開議하며出席理事數의過半數로서議決하고可否同數일 때에는議長이決定한다.

第33條(理事會議決事項)理事會의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附議事項
2. 本會의業務事業等運營에關한事項
3. 會員의入會審査決議事項
4. 財産,會計,給與에關한規程과其他諸規程의制定 및變更
5. 豫算의科目流用
6. 顧問추대
7. 會員의制裁 및除名

8. 其他定款에規定된事項 및必要하다고認定되는事項

第34條(書面決議)會長은附議事項內容이輕微하다고認定할 때 또는緊急을要하는事項에 대해서는書面으로議決할 수 있다.

## 第7章 財産 및 會計

第35條(基本財産 및 收入源)本會의財政收入은入會金,會費 및 其他收入으로 하고 다음의財産은基本財産으로 한다.

1. 入會金
2. 理事會議決로서指定된財産

第36條(財産의管理)本會의財産은理事會의議決에 따라會長이管理한다.

第37條(會計年度)本會의會計年度는政府의會計年度를適用한다.

第38條(豫算 및 決算)本會의事業計劃書,收支豫算書 및 決算書는每會計年度終了後 30日以内に總會의議決을 거치고主務部長官에게報告한다.

## 第8章 解 散

第39條(解散)本會의解散과 이에 따르는財産處分은主務部長官의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9章 附 則

第40條(細則)本定款에規定되지 않은 사항은理事會에서定하여施行한다.

第41條(施行)本定款은主務部長官의許可를 받은 날로부터施行한다.

第42條(經過措置)

- ① 本協會는舊韓國酪農協會와舊韓國企業牧場協會의業務와清算殘餘財産을引受한다.
- ② 舊韓國酪農協會와舊韓國企業牧場協會는'80年 12月31日까지殘務整理및清算을完了한다.
- ③ 本協會業務는'81年 1月1日부터開始한다.